

[사 건 명] 핵심 2018 - 8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씩 2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씩 2일, 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씩 2일 등』 처분
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8.10.18. 1교시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 학생에게 “애미 없네”
라는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후 ○○○이 청구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
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과하지 않았다.
- 나. ○○○은 같은 날 오전 10시 2분경 4층 위클래스 복도에서 빗자루로
청구인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코뼈가 부러졌다.
- 다. 2018.11.0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함)를 개최하여,
2018.11.19.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씩 2일 등』 처분 조치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 행위로 피해를 입어, 청구인의 대리인이 피청구인에게 찾아가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생에 대한 관심 및 관리 조치가 부족하였다.
- 나. 청구인이 ○○○에게 “애미 없네” 라고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해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나, 청구인은 ○○○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
- 다. 학폭위에서 청구인측과 ○○○ 학생측의 의견 진술 기회가 불공평하였으며, 구체적 확인과 객관적 증거 없이 내린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라. 또한 청구인측은 ●●●●● 국적으로 한국말이 서툴러 학폭위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통역도 대리인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 마. 이 사건 전날 청구인이 ○○○의 가방에서 떡을 꺼내 먹고 쓰레기를 가방에 넣었다는 주장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떡을 먹은 것이며, 쓰레기를 가방에 넣은 건 시기가 다르다.
- 바. 학교에서 충분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
- 사. 학폭위에서 진술기회와 내용, 시간 등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 학생측의 주장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욕을 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목격 학생들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 아. 떡과 관련된 사건을 진술하면서 이 사례 또한 청구인이 원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폭력 사건의 유일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CCTV 녹화기록은 비록 음성 녹음이 없다 하더라도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추정하여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 보호자에게 이 사건의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안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치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에게 “너는 애미 없네”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과하지 않자 결국 청구인을 빗자루로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며, 청구인이 ○○○에게 한 부모님 욕 역시 언어폭력으로 모욕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 대해 학교폭력 ‘심각성 낮음’, ‘지속성 보통’, ‘고의성 낮음’, ‘반성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 으로 판단하였고 총 6점에 해당하는 3호 조치를 심의, 결정하였다.
- 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에게 부모님 욕(언어폭력)을 함으로써 ○○○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조치이며, 학폭위에서는 전담기구에서 확인된 피해, 가해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 마.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떡 사건은 다소 청구인의 주장과 ○○○ 학생 주장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쪽 학생간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가해학생으로서 받은 조치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관리 책임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

바. 피청구인은 전담기구에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학폭위 위원들에게 판단 자료로 제공하였다.

사. 청구인은 떡 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주장하는 바이나,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부모 욕을 한 사실이며, 떡 사건은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 사항 정도로 참고하였을 뿐이다.

아. 청구인은 CCTV 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CCTV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부모님 욕을 하였는지 여부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10.18. 1교시 수업시간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애미 없네” 라는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후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과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애미 없네” 라는 부모님 욕을 한 이 사건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우리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피해학생의 가해행위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해학생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내봉사 처분 등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행위태양 및 결과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교내봉사 처분 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4.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교내봉사 처분 등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